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90호

창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허용 기준,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옥외조리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영업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4,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kimhk7@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상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

발의연월일 : 2026. 11. 18.

발 의 의 원 : 지상록・감규상・강창석・김우진・박강우 박연정・박영주・이우완・이정희・전홍표 하경석・황점복 의원(12명)

1. 제안이유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허용 기준,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옥외조리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영업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 각 목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를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후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영업신고한 건물 내 조리장에서 세척, 절단·해동 및 조미 등 전처리를 마친 식재료 또는 음식류를 옥외영업장에서 굽거나 데우거나 끓이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옥외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옥외조리 허용 기준) ① 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옥외영업장에서 옥외조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옥외영업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밖에 있을 것
2. 옥외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을 것
3. 보행자 및 차량 통행, 피난·소방활동 또는 공중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제5조(영업자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별표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영업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옥외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법 제43조에 따라 옥외영업장에서는 스피커, 반주기, 마이크 등 음향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영업장 음향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옥외영업을 신고하고 영업 중인 자로서 옥외영업장에서 스피커, 반주기, 마이크 등

음향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제6조제2항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창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영업자 준수사항(제5조 관련)

1.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시설기준

가. 시설 및 비품 관리

1) 영업 종료 후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건물 안에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연료용기는 관계 법령과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2) 영업 종료 후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수거·보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옥외영업장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옥외영업장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4) 옥외영업장으로 신고한 구역의 경계가 불분명한 등의 사유로 구역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표지 또는 바닥의 선 등을 이용하여 해당 구역을 표시해야 한다.

나. 옥외조리 기구 및 연료 관리

1) 옥외조리에는 전기조리기구와 휴대용 가스연소기만 사용해야 하며, 숯, 연탄, 번개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조리기구와 연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품의 취급상 주의사항에 맞게 설치·사용·보관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옥외영업 안전관리 수칙

가. 추락사고 방지

1) 옥외영업장의 난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난간은 영유아·어린이 등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파손·탈락 등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3) 난간 주변의 테이블·의자 및 적재물은 이용자의 추락이나 물건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관리해야 한다.

나. 시설물 안전관리

1)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이동이 가능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물과 조리기구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피난·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배치해야 한다.

3)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해서는 안 된다.

4)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차량 안전사고 방지

-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공지 또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보호 난간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장을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마. 기상특보 시 조치

1) 강풍주의보 또는 태풍주의보 이상이 발효되면 옥외영업을 중지하고, 조리기구, 파라솔, 천막 등 이동식 시설물을 지체 없이 건물 내부 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고정해야 한다.

2) 창원시장이 재난 문자 등으로 야외 활동 자제를 안내한 경우 기상 상황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옥외영업의 중지, 시설물 정리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도.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삭제 <2023. 5. 19.>

2) 삭제 <2023. 5. 19.>